거창군 Geochang County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912호 2023. 5. 17.(수)

거창 후 거창

선 결	기관의 장

훈 령

거창군 훈령 제467호 거창군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 ····· 2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23-5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····· 4
거창군 고시 제2023-60호 도로명주소 고시 ····· 6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3-865호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 ····· 7
거창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3-3호 「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 8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http://www.geochang.go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거 창 군 수

서 명 생 략

2023년 5월 17일

거창군 훈령 제467호

거창군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

거창군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

의안 번호	2023-

제출일자	2023. 5. .
제 출 자	안전총괄과장

1. 제안 이유

「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및 「거창군 통합방위 예규(대외비)」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거창군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통합방위법」제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고시 제2023 - 59호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)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거 창 군 수

1. **고시일자** : 2023. 5. 17.

2. **고시방법** : 거창군보, 거창군 홈페이지, 게시판

3. **고시내용**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/ [붙임] 참조

※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

4. **참고사항**

○ 도로구간의 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5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○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로구간 변경 조서

일련번호	행정구역	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앙선	건물번호	사물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1	웅양면	변경 전	원촌5길	웅양면 동호리 1335-1 (원촌5길 124)	-	도면참조	1	1	종속구간 **생성**	직권
		변경 후	원촌5길	웅양면 동호리 1335-1 (원촌5길 124-1)	웅양면 동호리 산2-15 (원촌5길 124-108)	도면참조				

주소정보기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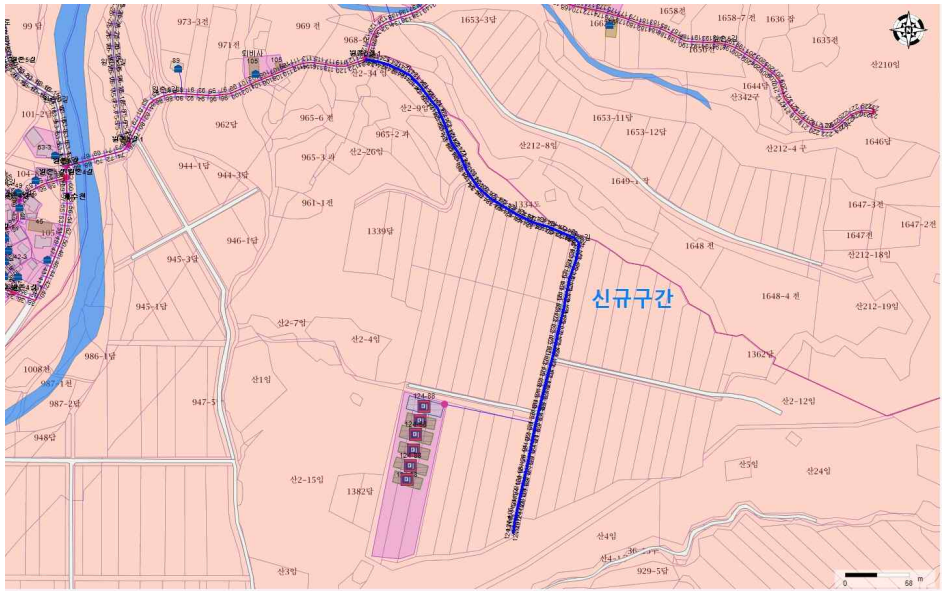

위성사진

거창군 고시 제2023 - 6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5. 17.

거 창 군 수

○ **도로명주소 고시대상**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25-4 등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**도로명주소 사용**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**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**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**참고사항**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4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공고 제2023 - 865호

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

「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」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 결정한 소규모수도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2일

거 창 군 수

1. 내 용 :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
2. 사 유 : 대체급수시설 확보(지방상수도 급수)
3. 근 거 : 「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」제11조 제1항
4. 대 상 : 거창군 가조면 중평마을 소규모수도시설 1개소

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 내역

연번	위 치		시설명	폐지사유	폐지 후 급수대책	비 고
	읍·면·동	리				
1	가조	동례	중평	지방상수도 공급	지방상수도 급수	

끝.

거창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3- 3호

「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2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

2. 개정이유

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개정(2023. 3. 28. 시행)으로 정보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기준 신설함(안 별표)

1) 대상 :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

2) 금액 : 1차 1천만원, 2차 2천만원, 3차 3천만원

3) 근거 : 「 지역보건법 」 제34조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보건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55-940-8309, 이메일(okay0004@korea.kr)

라. 제출기한 : 2023. 5. 31.(화) 18:00까지 도달

마. 제출주소 : (우 50132)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 민원실 (보건정책과)

바. 문의전화 : 055-940-8377

붙임 1. 의견 제출서 1부.

2.「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일부개정안 1부.

3. 관련법령 1부. 끝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입법예고 내용	의　　견	비　고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”을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의 2.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
「지역보건법」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**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**	**1,000**	**2,000**	**3,000**
「지역보건법」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**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2항제1호**	100	200	300
「지역보건법」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	**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2항제2호**	100	200	3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역보건법」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305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